

#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라 한다.

### 제2조

본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제협력선교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국제협력교회와 선교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제 에큐메니컬 선교 활동과 2, 3세계 선교협력을 위한 연대와 지원과 공동 증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훈련을 통하여 국제협력선교 사업을 수행한다.

## 제2장 조 직

### 제3조

본회의 조직은 각 노회가 파송하는 국제협력선교위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가 추천한 2인, 남·여신도회, 청년회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제4조

노회가 파송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총회 공천위원회 공천 확인 후 시작한다. (임기시작일 : 3월 정기노회는 4월에 임기시작, 4월 정기노회는 5월에 임기시작)

### 제5조

본 위원회는 정책 입안을 위한 전문 위원과 재정 확보를 위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6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 제7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8조

임원 선임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4장 사업 및 실행위원

### 제9조

1. 사업 : 본 위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국제문제에 대한 책임적 참여를 위하여 활동하고, 국제협력 교단과의 에큐메니컬 협력사업, 노회 간 교류의 확대와 국제협력선교 확대 및 국제협력선교 지원 프로젝트, 해외 한인 목회를 위한 협력과 지원, 선교동역자 파송에 따른 관리와 지원, 교육 및 훈련 업무, 장학프로그램, 국제협력 교단이 파송한 협동선교동역자들에 대한 관리 등 국제협력선교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회 업무와 사업의 전문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행위원을 두어 처리할 수 있다.

## 제5장 훈련센터

### 제10조

본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선교 훈련 프로그램, 외국어 훈련 프로그램을 주관, 운영하며 정책 수립과 정보수집,

국제 관계 및 국제협력선교 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선교동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선교 권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6장 재 정

### 제 11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일반 예산과 국제협력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7장 개정 및 시행

### 제 12조

1. 본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 9월 제76회 총회 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